

1. 개정이유

영유아보육법 개정(법률 제20380호, 2024. 3. 19. 공포)으로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및 성범죄 전력자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자격 결격사유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,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득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결격사유 확인 방법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.

또한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이 경과하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자에 대한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결격사유 확인 방법을 규정하고, 자격증 재발급 신청 사유에 자격증 분실·훼손 외에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유도 포함함으로써 현행 법령의 미비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명시(안 제18조제1항제1호 개정)
- 나.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성범죄 전력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“자격증업무 담당기관”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되,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(안 제18조제2항·제3항 신설)
- 다.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 취소된 자가 법 제48조제2항의 자격 재교부 제한 기한이 경과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

한편,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을 확인하고 제48조 제1항의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음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규정(안 제18조제4항 신설)

라. 자격증 재발급 사유로 분실·훼손 외에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추가
(안 제18조제5항 개정)

마. 법 제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를 반영해 어린이집 원장·보육교사 자격증 발급(재발급) 신청서 개정(별지 제11호서식 개정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계 기관 협의되었음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제1호 중 “사진 1장”을 “사진 1장, 법 제2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법 제21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조회하여 줄 것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(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조회 요청을 포함한다.)하여야 한다.

③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은 제2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할 때는 해당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자격증 발급·재발급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.)를 제출할 때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취소된 자격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 여부 확인 외에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경과 여부 확인,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8조제5항(중전의 제2항)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”를 “자격증 분실 또는 훼손,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사유로”로 한다.

1. 공통 제출서류 : 자격증(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.), 사진(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) 1장
2.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: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부(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1부(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한다.)

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]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 [] 발급 신청서
[] 보육교사 [] 재발급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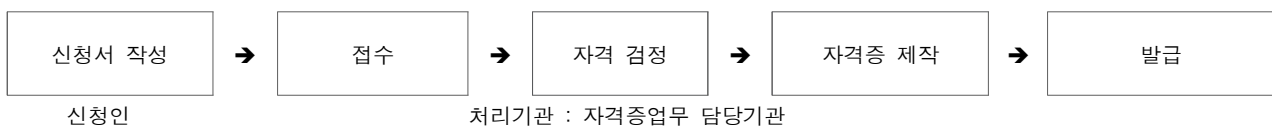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4일
------	-----	----------
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사진 (3cm×4cm)
	주소		
	전화번호(휴대전화)	전자우편	
자격 종류	어린이집 원장 ☐ 일반 ☐ 40명 미만 ☐ 가정 ☐ 영아 전담 ☐ 장애아 전문		
	보육교사 ☐ 1급 ☐ 2급 ☐ 3급		

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	1. 공통: 사진(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) 1장. 법 제21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, 법 제21조의2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1부(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.) 2.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 발급신청자: 자격증 사본, 경력증명서,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, 사전직무교육 수료증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.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자: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졸업증명서·성적증명서 및 보육실습확인서(다만, 보육실습확인서는 1998년 3월 이후 졸업한 해당자만 한정합니다.), 교육훈련시설 수료증(해당자만 첨부합니다.), 보수교육 수료증(승급자만 해당합니다.), 경력증명서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. 자격 취소 후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자격증 발급신청자 :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경과 여부 확인,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1만원
재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	1. 공통: 자격증(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.), 사진(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) 1장 2. 성명이 변경된 경우: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부(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.) 3.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: 주민등록표 초본 1부 (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.)	

처리 절차

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8조(자격증의 발급 등) ① 법 제22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받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(이하 “자격증”이라 한다)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자격증 발급·재발급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(이하 “자격증업무 담당기관”이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	제18조(자격증의 발급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공통 제출서류 : 사진(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합판) <u>1장</u>	1. ----- ----- ----- <u>1장, 법 제2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</u>
2. · 3. (생략) <u><신 설></u>	2. · 3. (현행과 같음) ② <u>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법 제21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조회하여 줄 것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(「전자정부법」 제36</u>

<신 설>

<신 설>

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·재발급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

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조회 요청을 포함한다.)하여야 한다.

③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은 제2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할 때는 해당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자격증 발급·재발급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.)를 제출할 때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취소된 자격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 여부 확인 외에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경과 여부 확인,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⑤ -----
-----자격증 분실 또는 훼손,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사유로 -----

함한다)를 첨부하여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자격증(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.)

2. 사진(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) 1장

<신 설>

③ (생 략)

-----.

1. 공통 제출서류 : 자격증(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.), 사진(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) 1장

(제1호로 이동)

2.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: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부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1부(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한다.)

⑥ (현행 제3항과 같음)